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66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상정	소위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129	윤준병의원 등 20인	'25.3.20.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소위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14.)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09	이연희의원 등 15인	'25.10.28.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12.17.)
				소위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14.)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30.)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소유자 등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

리를 가진 자는 보상금 수령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고발조치 시 민원 악화 및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하여 적극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상금 수령 이후 퇴거 불응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강제도 불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보상금 수령 이후 자진이주, 퇴거 거부로 인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에 따른 이전·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용이 개시된 이후에도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 완료 시 까지 1회 1천만 원(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89조의2 신설).

나.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신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이행강제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별표 제2호 중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빈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제2호 중 (38)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제2호에 (9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9조의2(이행강제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p><u>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u></p>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